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5. . . |
| 발 의 자 | 김원섭 의원 외 1인 |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(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5. . .

발 의 자 : 김원섭·정지원 의원(2인)

찬 성 자 : 김근한·김낙관·김민성·김춘남

소진혁·양진오·이정희·장미경

장세구·추은희 의원(10인)

1. 제안이유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(이하 구미코)가 위치한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번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,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으로 기존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용지에서 시행되지 못했던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해짐
이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

나. 명칭과 소재지(안 제2조)

다. 사업(안 제3조)

- 라. 사용료 감면(안 제5조)
- 마. 사용료 반환(안 제7조)
- 바. 부대·편익시설의 임대(안 제9조)
- 사. [별표] 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, 제84조, 제85조, [별표14]
- 2)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3조

나. 부서검토: 신산업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과 소재지)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 칭: 구미컨벤션센터(구미코)
2. 소재지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

제3조(사업) 구미컨벤션센터(이하 “구미코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각종 전시회, 박람회, 이벤트 등
2. 회의, 세미나, 심포지엄, 공연, 연회 등
3. 구미코 시설, 부대장비, 부대·편익시설의 임대사업

4.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4조(사용허가 등) 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[별표]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사용의 제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
2. 화재, 사치,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
3.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
4.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

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2. 관리·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제8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대·편익시설의 임대)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·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(수도, 전기,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)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(위탁)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·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지원)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구미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홍보관, 다목적실,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홍보관, 다목적실,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■[별표]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(제4조제2항 관련)

1. 전시장 등 사용료

| 구분 | | | | 임대요율 | 비고 |
|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장소별 | 1층 | 홍보관 | 홍보관1홀 (369㎡) | 1,200원 /㎡ | 08:00 ~ 20:00 |
| | | | 홍보관2홀 (375㎡) | | |
| | | | 홍보관3홀 (346㎡) | | |
| | 다목적실(440㎡) | | | | |
| 2층 | 전시장(3,402㎡) (2개홀 분할가능) | | | | |
| 옥외 | 야외전시장 | | 600원/㎡ | | |
| 할인 | 1,2,7,8,12월 50% 할인 전관 사용 10% 할인(비수기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) | | | | |
| 시간의 사용료 | 전시장 기본사용시간 (08:00~20:00)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%를 가산한다. 단, 시간의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. | | | | |
| 관리비 예치금 | 기본 임대료의 20% | | | | |

2. 회의실 사용료

| 층수 | 시설명 | 실수 | 면적(㎡) | 임대료(단위: 원) | | 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| | 오전(09~12) | 오후(13~17) | 야간(18~21) | 전일(09~17) | 반일(13~21) | 종일(09~21) | 시간당 초과요금 |
| 3층 | 대회의실 | 1실 | 452 | 531,000 | 815,000 | 475,000 | 1,265,000 | 1,439,000 | 1,952,000 | 177,000 |
| | 중회의실 | 1실 | 223 | 262,000 | 402,000 | 234,000 | 624,000 | 710,000 | 963,000 | 87,000 |
| | | (2분할) | 111 | 157,000 | 241,000 | 140,000 | 374,000 | 426,000 | 578,000 | 52,000 |
| | 소회의실 | 1실 | 278 | 326,000 | 501,000 | 292,000 | 778,000 | 885,000 | 1,200,000 | 108,000 |
| | | (2분할) | 139 | 196,000 | 300,000 | 175,000 | 467,000 | 531,000 | 720,000 | 64,000 |
| | | (4분할) | 69 | 106,000 | 162,000 | 95,000 | 252,000 | 287,000 | 390,000 | 35,000 |
| 1층 | 다목적실 | 1실 | 260 | 305,000 | 469,000 | 273,000 | 728,000 | 828,000 | 1,122,000 | 101,000 |

※ 비고 : 시간당 초과 요금은 30분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(이하 “대도시 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3. 공업지역

가. 전용공업지역 : 주로 중화학공업,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일반공업지역 :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준공업지역 :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, 주거기능·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

제8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.

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
13. 준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
제8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,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12. 일반공업지역 :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

13. 준공업지역 :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

[별표13]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, [별표14]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
|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71조제1항제12호관련) |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(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) |
|---|--|
| <p>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</p> <p>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</p> <p>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</p> <p>2.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p> <p>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</p> <p>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(일반업무시설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)</p> <p>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p> <p>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</p> <p>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</p> <p>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</p> <p>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</p> <p>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</p> | <p>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</p> <p>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)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</p> <p>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</p> <p>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</p> <p>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</p> <p>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</p> <p>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</p> |

□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

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1조, 영 제78조제1항

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2.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2와 같다.

13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3과 같다.

|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3조) |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제33조) |
|--|---|
| <p>1.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</p> <p>2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(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)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)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·중·고등학교, 직업훈련소, 기술계학원, 연구소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</p> <p>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</p> | <p>1.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</p> <p>2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)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동호 다목, 라목, 사목 및 아목 시설은 제외한다.)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</p> |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신산업정책과

| 조 례 명 |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▪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칭 ○ 사업의 내용 ○ 사용료 감면 ○ 사용료 반환 ○ [별표]전시장 및 회의실 등 사용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용도변경에 따른 위탁 사업 내용을 현행화하고, 건축물 용도가 ‘산업전시장’에서 ‘전시장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시컨벤션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단위의 전시컨벤션 행사도 유치하고자 ‘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’ 명칭을 ‘구미컨벤션센터(구미코)’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대책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대효과 : 제한적인 행사개최 탈피·복합문화시설로서의 사업 다각화, 개방적 공간 활용, 부대 편의시설 유치 등 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 | |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내지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세출증가분 해당사항 없음
- 사용료 인상과 신규 부대시설 임대(혹은 위탁)로 세입의 증가 예상됨

4. 작성자

- 신산업정책과 행정8급 김국렬(480-6172)